

평창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5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03년 4월 일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-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(대통령령제17894호, '03. 1. 20)에 의하여 특수업무시설 근무자에 지급되는 장려수당을 조정하여 근무환경이 열악한 기관 및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가. 특수업무수당(장려수당)지급액을 다음과 같이 조정(인상)코자 함.

[별표 3] 개정

지 급 대 상	현 재	조 정 액	비 고
① 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·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	월180,000원	월270,000원	인상율 50%
② 분뇨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	월150,000원	월240,000원	인상율 60%
③ 하수·폐수 및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	월120,000원	월240,000원	인상율 100%

※ 분뇨처리장과 쓰레기매립장은 근무여건이 비슷하므로 지급액 동일적용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별첨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다. 관계부처승인 : 해당없음
- 라. 입법예고 : 해당없음
- 마. 신·구조문대비표 : 해당없음
- 바. 조례·규칙심의회 : 제5회 평창군조례·규칙심의회(2003. 4. 9)원안의결

평창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

평창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 3]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[별표 3]

장려수당지급 구분표

지 급 대 상	지 급 액
① 시체화장 업무 및 묘지·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	월270,000원
② 분뇨·하수·폐수 및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	월240,000원

관 계 법 령

○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(개정) <제17894호, 2003.1.20>

[별표 9] 특수업무수당지급 구분표(2003. 7. 1부터 적용)

수 당 명	지 급 대 상	지급 시기	지급액	비 고
장려수당	위생처리장·하수처리장·쓰레기 처리장등 분뇨·하수폐수·쓰레기 처리업무 전담기관·시설근무자 (현장종사자 포함)	매월	조례로 정하는 금액 ·월 50,000원~270,000원 범위내에서 ·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결정	'91.1월 신설 '94.1월 위임 '03.1월 인상
	화장장등 시체화장업무전담기관· 시설근무자 공원요지·납골당등 요지·납골당 관리·유지 전담기관·시설근무자			

※ 인상범위 : (월50,000원~200,000원) ⇒ (월50,000원~270,000원) (35%↑)